

성남 도시관리계획(국지도 23호선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성남 도시관리계획(국지도 23호선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2025. 12. 22.

성 남 시 장

가. 국지도23호선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: 변경없음

나. 국지도23호선변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- 1)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: 변경없음
- 2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: 변경없음
- 3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: 변경없음
- 4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: 변경없음
- 5)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조서: 변경

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

기 정	변 경 (안)	비 고
제6장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15조(보차혼용통로) ① ~ ④ (생략) ⑤ 보차혼용통로의 조성은 각각의 건축이 행해지는 시점에 건축허가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(건축주 등)가 보차혼용통로 토지주의 동의를 득한 후 조성한다. ⑥ ~ ⑨ (생략)	제6장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15조(보차혼용통로) ① ~ ④ (생략) ⑤ 보차혼용통로는 사업시행자(건축주 등)가 건축허가 등을 위해 보차혼용통로 토지주의 동의를 득한 후 조성한다. 다만, 건축하려는 대지에 접한 보차혼용통로가 폭 4미터 이상으로 이미 조성이 완료된 경우(조성을 위한 동의를 득한 경우를 포함하며,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조성을 완료하여야 한다.), 당해 대지에 지정된 보차혼용통로만 모두 조성하면 건축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한다. ⑥ ~ ⑨ (생략)	